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규모 설비 변경 신고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371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19.
3. 회부연월일 : 2025. 1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허가·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0조의2·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발전사업 등 전기사업의 소규모 설비 변경 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무인가 주식 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며, 분산된 발전사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의2, 제12조제1항, 제24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생략) <u><신설></u>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신설></u>	<u>③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u>
<u>② ~ ⑤</u> (생략)	<u>④ ~ ⑦</u>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u>⑥</u>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	<u>⑧</u> -----

현행	개정안
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u>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기준·절차,</u>-----.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 ----- ----- ----- ----- ----- <u>허가권자에게</u>-----.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4의2. (생략)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 14. (생략) ② ~ ④ (생략)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생략) ⑥·⑦ (생략) <u><신설></u>	4의2.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 ----- ----<u>일부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u>----- ----- 6. ~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1. -----<u>제1항제4호의3, 제5호부터</u>----- ----- ----- 2.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u>제24조의3(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u> 기후에너지환경부장

현행	개정안
	관은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업 관련 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포함한다)의 관리와 전기사업 인·허가등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에 관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보유·관리 및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신고에 관한 정보 2. 제7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관한 정보 3. 제9조에 따른 사업개시에 관한 정보 4.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합병 또는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인가 정보 5.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에 관한 정보 6.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현행	개정안
	<u>의 승계에 관한 정보</u> 7. 제12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에 <u>관한 정보</u> 8. 제2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 <u>한 조치에 관한 정보</u> 9. 제2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 <u>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u> 10. 제61조 및 「전기안전관리 <u>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u> 11.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u>따른 사용전검사에 관한 정보</u> 1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u>으로 정하는 정보</u>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 권자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 게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 에 필요한 정보의 입력 또는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 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 에 관한 설비 및 「전기안전관리

현행	개정안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을 인가받았거나 신고한 전기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부여 하는 방법으로 설비 관련 정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 사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 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 항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 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 른다. ⑦ 그 밖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특징]

구분	개정 대상 조문	주요 개정 내용
① 소규모 변경 신고	제7조제2항·제3항(신설) 제12조제1항제4호의2(신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항 변경 시 ' 신고제도 ' 도입 -신고·변경신고 미이행 시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규정 신설
② 시설인수 신고	제10조의2제1항	-경매 등에 따른 사업용 시설 인수 시 신고 수리권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 허가 권자 '로 변경
③ 무인가 주식취득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5항제1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 시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 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5천만 원 이하) 부과근거 신설
④ 통합관리 시스템	제24조의3(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 전기사업정보시스템 ' 구축·운영, 정보 수집, 고유번호 부여 권한 명시

본 개정안은 하나의 법률안에 전기사업 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4가지 핵심 사안을 포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무분별한 쪼개기 증설과 전력계통¹⁾ 불안을 야기했던 '소규모 설비 변경'을 양성화하여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② 경매 등 시설 인수 시 신고 기관을 최초 허가권자와 일치시켜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③ 자본력을 앞세운 무인가 주식 취득 행위에 대한 엄격한 금전적 제재 수단을 신설하여 전력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④ 지자체별로 파편화된 발전사업 인허가 데이터를 중앙 집중형으로 통합하여 국가 차원의 전력수급 예측력을 높이려는 것임.

1) 전력계통 (Grid):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송전, 변전, 배전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연결된 모든 전기설비의 물리적 연결망.

이처럼 본 개정안은 전반적인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제도의 맹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다만, 신설되는 신고제도의 실무적 집행 기준, 타 법령(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의 선후 관계,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자원 확보 및 중복성 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소규모 설비 변경 신고제(안 제7조제2항)의 기준 명확화 및 타 인허가 절차와의 조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 실무상 발전설비 용량의 10%를 초과하는 변경은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0% 이하의 소규모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적 절차가 부재함²⁾.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기 위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쪼개기식 증설로 인한 계통 불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소규모 설비 변경의 법적 사각지대: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은 발전설비 용량 변경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변경 정도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로 인해 10% 이하의 용량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 의무도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본 개정안에 대해 수용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신고제 도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는 소규모 변경이라도 설비의 면적·부피 등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변경허가³⁾ 대상이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완료한 후 전기사업법상 신고를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상 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는 목적이 다르며, 선후 관계를 강제할 경우 사업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잦은 소규모 변경을 악용하는 편법적 증설을 통제하되, 발전사업자에게 이중 규제나 과도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시행규칙)에 위임될 '신고 대상 및 수리 기준'의 구체적 설계 방향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개발행위 변경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전기설비의 용량이 변경되면서 태양광 패널 면적이나 구조물 부피가 늘어날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둘째, 시설인수 신고 수리권자 일원화(안 제10조의2제1항) 및 무
인가 주식취득 제재(안 제12조)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전기사업의 최초 허가권자는 설비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3MW 초과)과 시·도지사(3MW 이하)로 이원화되어 있음⁴⁾.

그러나 경매 등으로 시설을 인수한 자의 '사업 승계 신고'는 용량과
무관하게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
정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발전사업 규모별 현행 행정 권한 불일치 현황 및 개정안 비교]

구분	최초 사업 허가권자	경매 등 시설인수 신고 (현행)	시설인수 신고 (개정안)
설비용량 3MW 초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설비용량 3MW 이하	시·도지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불일치)	시·도지사 (일원화)

위 표와 같이 개정안은 신고 수리권자를 최초 허가권자로 통일하려
는 것이므로, 인허가 관리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또한, 현행법(제10조)은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전기사업자의 주식
을 취득할 경우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

4) 발전사업 허가권한의 위임: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같은 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비
용량 3천킬로와트(3MW)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 양수 인가, 허가 취소 등의 권한은 관할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수단이 전무함.

개정안은 이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 사업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⁵⁾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⁶⁾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⁷⁾ 등 타 주요 법령에서도 기업 지배구조 변동 요건 위반 시 엄격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 규정 신설은 인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셋째,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안 제24조의3)의 타당성 및 부처의 세부 추진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현재 발전사업 인·허가 정보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단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국가 전체의 발전소 가동 현황과 전력망 연계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설비에 고유번호를 부여

5)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현행 전기사업법은 정지명령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대체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제재: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제147조) 등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제150조에 따라 위반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제429조제4항에 따라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됨.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제재: 제11조에 따른 기업결합(주식 취득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하여 통합 관리하려는 개정안의 방향성은 국가 전력 수급 관리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시스템 구축에 수반되는 예산, 기존 시스템과의 중복 문제, 데이터 정합성 확보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를 이미 마치고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3개년('25~'27년) 예산 및 구축 로드맵(안)>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선,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3개년('25~'27년) 구축 예산(총 79.6억 원)을 기 확보하였으므로 별도의 대규모 국가 재정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연도별 세부사업 소요예산]

(단위: 억원)

세부사업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총계
① 인허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17.7	31.0	30.9	8	8	95.6
총계	17.7	31.0	30.9	8	8	95.6

주) ('28~'29년)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예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운영 중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⁸⁾' 등 기존 시스템과의 정보 중복 수집 우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통합관리시스템이 '인허가 신청부터 사업개시 전'까지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반면, 기존 시스템은 '인허가 이후'의 안전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어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함.

오히려 신규 시스템을 통해 인허가 정보를 공공데이터 표준에 맞게 규격화하고, 부여된 고유 표준 코드(인허가번호)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지자체,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연계·공유함으로써 기존의 데이터 사각지대와 업무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안전점검 결과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전기안전관리법」 제38조(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전기 관련 협회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허가번호 구성체계(안) 】

2025	-	B	47	111	0001	-	S
2025	-	H	41	430	0032	-	G
2025	-	C	52	130	0167	-	W
			시도	시군구			
①허가 연도		②설비용도 및 허가기관구분	③설치(허가)지역 -시군구 단위		④일련번호		⑤발전원

- ① 허가 연도: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인허가 승인을 받은 연도 4자리
- ② 설비용도 및 허가기관구분:
A(사업용-중앙부처), B(사업용-광역), C(사업용-기초), H(자가용), O(일반용), Z(기타)
- ③ 설치(허가) 지역: 발전설비 설치(허가) 장소의 법정동코드 5자리(시도시군구 코드)
- ④ 일련번호: 각 허가기관의 당해 연도 인허가 승인 순번
- ⑤ 발전원: S(태양광), W(풍력), F(연료전지), C(석탄), G(가스), L(LNG), E(기타) 등

결론적으로 개정안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의 타당성과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사전 준비는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3개년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가 확립되고 사업자의 무분별한 쏙 개기 증설 등 전력계통의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본연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7